

2023년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2차)

중소벤처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부 물류전용 수출 바우처사업(일반·온라인수출기업 유형, 수출국 다변화기업 유형)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 어려움 지속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 대상 국제운송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물류애로 완화

□ 모집규모 : 약 1,500 개사 내외(온라인 수출기업 400개사 포함)

□ 사업기간 : '23. 6. 1 ~ 12. 31* (단, 정산은 '23.1.1일 발생분부터 신청가능)

* 물류비 신청현황 등에 따라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마감되며, 사업기간(~12.31일) 내 발생한 물류비에 한해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24.1.31일) 내 정산 완료

□ 주무부처 / 운영기관 : 중소기업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23.1.1. 이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 최대 15백만원 지원(자부담금 30%)
 - ① 일반·온라인수출기업 최대 10백만원, ② 수출국 다변화기업 및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기업 최대 15백만원

* 정부보조금 지급은 '수출바우처'와 같이 '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 및 '정산 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

** 1차 지원기업 중 한도금액이 남은 기업들은 2차 사업기간(~12.31일) 내 정산 가능

2. 지원요건

□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지원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선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지급된 바우처 발급액으로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1) '22년 및 '23년 참여기업 중 협약기간이 미종료된 기업(사업신청일 기준)
 - * 협약기간 내에는 사업참여가 제한되며, 협약종료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 2) 중기부 수출바우처와는 동시 지원이 가능하나, 동일 물류비 발생건으로 중복 정산 불가
- ◆ '23년 산업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중	담배 중개업
	46331	주류, 담배 도매업
	46333	
4722중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캠블링 및 배팅업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 인코텀즈 E조건(EXW) 및 F조건(FCA, FAS, FOB)은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기업이 '23. 1. 1 이후 발생한 물류비용을 선 집행완료한 후, 지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정산 가능/불가 항목]

구분	세부내용
필수 충족요건	- 운송 물품이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운송인 경우 지원가능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에 한해 지원
정산 가능항목	① 항공·해상운송료 ② 보험료 ③ 국제복합운송료(기항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국제운송) ④ 현지 내륙운송료(현지 내륙운송료는 인코텀즈 D조건에 한하여 지원) ⑤ 추가할증료 : 유류할증료, 저유할증료, 보안할증료, 성수기할증료 ⑥ 정산검수 신청가능 물류비 = ①+②+③+④+⑤ (참고) 최종정산예정금액 = ⑥ × 70% * 우체국 특송 서비스(EMS, K-packet, 기업화물 서비스 등)도 정산 가능
정산 불가항목 예시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 및 F조건 수출거래 - 현지 통관료 : 화물의 관할 세관 신고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 - 풀필먼트 서비스 : 수입대행, 입출고, 창고지원, 배송 등 * 단, 풀필먼트 서비스 계약을 활용한 국내→해외 해상 또는 항공 운송,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에 한해 정산가능 -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위험물 취급수수료 등)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 - 각종 문서 송달비용 -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료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 무상거래 샘플운송 -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 (유의) 상기 정산불가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정산가능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정산 불가함

□ 지원 한도

- '23.1.1일 이후 발생한 물류비 최대 15백만원 지원 (자부담 30%)
 - 일반·온라인수출기업 및 수출국 다변화기업 유형 중 한가지 유형만 신청가능(중도 변경 불가)

신청구분	지원한도	비고
일반·온라인수출기업	10백만원	온라인수출기업은 400개사 우선선정
수출국 다변화기업	15백만원	'21년도 수출국가 대비 '22년도 수출국가가 신규로 증가한 기업'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 기업	15백만원	'23년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 기업 * 신청 등 별도 안내 예정

* 수출국 다변화기업 인정 기준 : '21년 대비 '22년 신규 수출 국가가 추가되고, **전체 수출국가 수가 같거나 증가한** 기업(21년, '22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제출 필요)

< 수출국 다변화기업 인정 사례 >

구분	21년 수출국	22년 수출국	여부	비고
예시1	일본, 중국	일본, 중국, 미국	○	신규국가 추가 및 전년대비 전체 수출국가 수 증가
예시2	중국, 미국	일본, 중국	○	신규국가 추가 및 전년대비 전체 수출국가 수 동일
예시3	중국, 일본	미국	×	신규국가 추가되었으나, 전년대비 전체 수출국가수 감소

- 정산 가능 물류비 항목은 **합산하여 신청가능하며, 총 합산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

* 3페이지 '정산 가능/불가 항목' 참고

< 합산 신청 가능 사례 >

구분	한 회차 물류비 집행액	총 신청액	지원금액	
지원 가능	사례1	20만원	20만원	14만원
	사례2	5만원+3만원+5만원+2만원+5만원	20만원	14만원
	사례3	100만원+200만원+100만원+1만원+9만원	410만원	287만원
지원 불가	사례1	1만원+2만원+5만원+3만원+2만원	13만원	물류비 20만원 미만으로 요건탈락
	사례2	10만원(인코텀즈 D)+ 10만원(인코텀즈 F → 신청불가)*	10만원	

* 지원불가 사례2 기업은 10만원 집행액을 지원가능한 인코텀즈 조건에 해당하는 물류비 집행액과 합산하여 새로이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확인 후 지원 가능

4. 참여기업 신청방법

* 하기 내용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사업 신청

- '23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일반·온라인수출기업 유형 또는 수출국 다변화기업 유형 中 선택하여 신청

* 신청 페이지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shipping)

**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 기업은 별도 신청 안내 예정

② 지원대상 확인

- 지원신청 제외 대상여부, 지원가능 항목 여부,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 여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 *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이메일 등 개별 안내 예정

③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④ 정산 신청

- 전자협약체결 완료 기업은 **신청 당시 제출한 물류비 세부내역서 상 물류비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물류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정산 신청**

* 물류비 세부내역서는 신청일 기준 집행이 완료된 내역만 작성하여야 하며, 물류비 세부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정산서류는 정산불가

⑤ 정산금 지급

- 기업 정산신청 건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산 검수 후 정산금 지급

* 정산가능(서류보완 포함) 기간은 ~'24.1.31일까지이며, 정산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기간초과의 경우는 정산 불가

□ 신청방법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 온라인 상시 신청

- 누리집(홈페이지) 주소 : www.exportvoucher.com/shipping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 - 물류바우처 지원**' 선택하여 신청
- 신청 진행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 활용 필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 공인인증서 관련 세부내용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홈페이지 - 자료실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포털 기업인증서 안내('21.8.2) 게시글' 참고

□ 신청기간 : '23. 6. 1(목) ~ 12. 31(일)

- 물류비 발생시마다 신청 가능하고, 신청회차에 접수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예산 소진시에는 사업 조기 마감

□ 신청서류

◦ 일반·온라인수출기업

연번	일반·온라인수출기업
①	사업신청서
②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③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조희 동의서(온라인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온라인작성)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온라인작성)
④	중소기업확인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입금계좌 통장사본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⑧	(해당 시)온라인 수출기업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상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신고증, 온라인플랫폼 셀러 계정 보유 중 택일)

◦ 수출국 다변화기업

연번	수출국 다변화기업
①	사업신청서
②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③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온라인작성)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온라인작성)
④	중소기업확인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입금계좌 통장사본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⑧	'21년, '22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 사전신청 접수 및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매우 중요, 필독)

- **사업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도장 날인하여 스캔본 첨부하여 제출
* (유의사항) 법인기업 : 법인도장 날인, 개인기업 : 개인도장 날인 원칙
-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 물류비 건별 정산가능항목 금액을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작성 엑셀파일 원본 제출 (스캔본 제출 금지)
- **각종 정보제공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동의란에 체크 입력 (비동의 시 신청불가)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3개월 내 국세청 확인본(홈택스)으로 제출
- **입금계좌 통장사본** : 물류비를 입금 받을 사업자 명의 계좌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 스캔본 제출
* (유의사항) 법인기업 : 기업만, 개인기업 : 대표 개인 제출
- **온라인수출기업 증빙** : 전자상거래 종목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온라인플랫폼 셀러 계정 보유 증빙 中 택1 (온라인수출기업에 한함)

◦ 수출국 다변화기업 증빙 : '21년, '22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제출(수출국 다변화기업에 한함)

* 무역협회, 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가능

5. 유의사항

□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 정부보조금 지급은 '수출바우처'와 같이 '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 및 '정산 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 신청하는 물류비 건에 대해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건은 신청 불가하며, 향후 중복수급 적발시 보조금 환수 및 환수액 대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예정입니다.
- ◆ 정산신청시, 사업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합니다.
- ◆ 신청일 기준 집행이 완료된 물류비 내역만 작성하여야 하며, 정산신청 시 물류비 내역서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 사업 신청시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결격요건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별도 보완 요청없이 자동탈락 처리 예정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결격요건 해당 등으로 탈락한 경우,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추후 별도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상시신청접수 및 순차 지원에 따라 기존에 탈락처리된 신청건의 신청일자를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시)1차 신청 탈락(신청일 '23.6.24), 2차 신청 선정(신청일 '23.7.14) 시 신청일자 '23.2.14로 적용

6. 문의처

세부사업		담당기관 / 부서	전화번호
사업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물류 바우처" 선택 후 작성	
	전화 문의	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	055-752-8580
시스템	시스템 이용 관련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시스템" 선택 후 작성	